

한국체육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정 2003.10. 9. 416호
개정 2007. 2.28. 487호
개정 2010. 3. 5. 520호
개정 2010. 9. 6. 5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의 종류 및 종별)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의 4종으로 그 종별과 해당 학과(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학위논문의 구분) 학위논문은 학사학위논문·석사학위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논문지도교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학사과정은 졸업학년 초 3개월 이내에 학부(과)장이 선정한다.
2. 석사과정은 둘째 학기에 전공교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다만, 입학 전 타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첫째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할 수 있다.
3. 박사과정은 첫째 학기 이내에 전공교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②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하되, 전임교원의 정년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원생으로 제한한다.

1. 석사학위 과정

- 가. 체육학을 전공하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 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공교원과 전공 관련 전문가

2. 박사학위 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가. 체육학을 전공하는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체육학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타 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③지도교수가 한 학기에 지도할 수 있는 담당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5명(박사2명, 석사3명),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은 각 3명 이내
2. 입학당시 박사과정 입학생이 3명이고 전공교수가 1인일 경우 박사 3명, 석사는 대

학원간 구분 없이 6명 이내

3. 특별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논문지도교수변경) ①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와 전임교원의 정년이 내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도교수변경원(사유서첨부)을 소속 대학원장 또는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도교수 변경원은 학사과정은 학위논문제출 2월전,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제출 1학기 전, 박사과정은 학위논문제출 2학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자격) ①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은 자로 한다.

1. 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이상

2. 대학원 박사과정 3학기 이상

3. 사회체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이상

②박사과정의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은 재학 중에 책임연구자로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논문을 한국학술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또는 본교 스포츠사이언스지에 70% 이상의 게재실적(게재예정)이나 2편 이상의 논문게재(게재예정)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게재 실적비율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 논문 : 100%

2. 2인 논문 : 70%

3. 3인 논문 : 50%

4. 4인 이상 : 30%

③지도교수를 변경한 원생의 학위논문계획서 발표는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동일 전공)은 2학기 후로 연기된다.

제7조(학위논문연구계획서의 제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학위논문제출 1학기 전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위논문제출 당해 학기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논문연구계획서의 공개발표 및 심사) ①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에 논문연구계획 및 연구 결과를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②논문연구계획서 공개발표에 대한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소속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1. 석사과정은 본교의 조교수이상의 교원, 박사과정은 본교의 조교수이상의 교원

2. 해당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③논문연구계획서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이어야 한다.

④논문연구계획서 공개발표에서 중대한 오류로 지적되거나 불합격한 자는 재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학위논문제출 자격) ①학사학위논문 제출자격은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 취득자 또는 가능한 자로서 각 학부(과)가 정하는 요건이 있을 시 이를 충족한 자로 한다.

②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학점 24학점[(전공12학점, 일반대학원(연구법 3학점 포함), 교육대학원(전공10학점, 교직교과6학점 포함)]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영어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교과학점 36학점 중 전공 12점과 모 학문 및 심화전공 24학점(전공심화세미나 또는 인접학문 포함)이상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이 가능한 자

2. 외국시험,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

3. 다음의 학술활동 중 9회 이상의 학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참석 3회(필수)

나. 대학원 주관 연구세미나 참가 6회

다. 국제학술회의 참가 3회

④제13조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한 자와 재입학 자 중 퇴학 또는 제적된 지 4년이 경과한 자는 영어시험과 종합시험 및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 다시 합격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어시험) ①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로 필답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박사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며, 외국인원생에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의 평가방법 및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외국어시험 중 필답고사는 학기별로 실시하며, 출제위원은 본교 교수 중에서 소속대학원장이 위촉하여 출제한다.

제11조(종합시험) ①석·박사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과정

가.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나. 18학점이상 취득한 자

2. 박사학위 과정

가.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나.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석·박사 통합과정은 45학점이상)

③종합시험 평가방법은 필답고사로 하며, 각 과목별로 만점의 100분의 60이상을 합격

으로 인정한다. 다만, 불합격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④시험과목은 교과과정에 편성된 3과목 이상의 전공과목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선정하고, 시험시간은 각 과목당 60분으로 하며, 시험 시행학기 개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은 반드시 본인이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⑥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과목담당교수(외부강사포함)중 1인 이상으로 소속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학위논문작성) ①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석·박사학위논문은 영문 초록을 첨부해야 하며 그 논문이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②학위논문의 작성체제 및 규격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학위청구논문작성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학위논문제출 횟수 및 허용기간) ①학사학위논문은 과정수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과정수료 후 2년 이내에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석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군복무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완성된 학위논문 제출) ①석·박사학위청구자는 완성된 학위논문을 하드카바 5부, 종이카바 10부, 학위논문이 게재된 CD 1매를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논문 중 하드카바 5부는 심사위원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학사학위

제15조(학사학위수여 등) ①학사학위는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에 합격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졸업증서를, 연계전공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1호의 3 서식의 졸업증서를 준다.

②학사학위논문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부)는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또는 학부(과)별로 정한 실적심사로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논문제출) 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2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학부(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18조(심사평가 및 논문대체) ①논문심사 평가기준은 각 학부(과)에서 정하며 그 판정은 급(S) 또는 낙(U)으로 표기한다.

②제16조제2항의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및 실적심사는 학부(과)장 주관하에 실시하며

그 판정은 급(S) 또는 낙(U)으로 표기한다.

③ 제16조제2항의 실기발표 및 실적심사에 대한 평가는 논문심사방식에 준하며, 실기는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제3장 석사학위

제19조(석사학위수여) 석사학위는 제9조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중 심사위원의 최종 인준을 받은 논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20조(논문의 제출) 석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
2. 학위청구논문원고 3부

제21조 (심사위원구성 등)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제8조 제2항에 의거 선정된 자로 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학위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22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한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 과정의 논문심사는 초심과 종심으로 구분 실시하고, 초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수정 사항을 보완하여 소정기일 내에 종심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술시험은 종심에 실시한다.

③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경우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논문심사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학위수여의 결정) 석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박사학위

제25조(박사학위수여) 박사학위는 제9조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중 심사위원의 최종 인준을 받은 논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기를 준다.

제26조(논문의 제출) 박사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위원회에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부
2. 학위청구논문원고 5부

제27조(심사위원구성 등) ①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제8조 제2항에 의거 선정된 자로 하며, 심사위원 중 3인 이상은 박사학위(명예박사학위 제외)소지자이어야 한다.

②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되 2인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한다. 외부인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학원장이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학위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28조(논문심사) ①박사학위 과정의 논문심사는 초심, 본심(3회), 종심으로 구분 실시하고, 초심과 본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소정 기일 내에 종심을 실시한다.

②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차후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한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박사학위 초심(연구계획서 심사)은 공개발표로 하여야 하며, 공개발표 시 외부교수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29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논문심사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학위수여의 결정) 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1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명예박사학위

제32조(수여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인류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술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체육, 문화, 정치, 경제,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4. 한국체육대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제33조(학위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명예이학박사학위 또는 명예체육학박사학위로 한다.

제34조(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과반수 참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35조(학위수여의 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03.10. 9 제416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제6조 2항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시험중 수업에 의한 평가는 2004학년도 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③(학위수여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학위수여규정, 한국체육대학교사회체육대학원학위수여규정, 한국체육대학교교육대학원학위수여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2004. 9.21 제435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7 제471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8 제487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8 제48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5 제52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당시 재학 중인 원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6조 제2항, 제9조 제3항, 제10조 제3항 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9. 6 제53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위종류	학위종별	해당학과(부)	후드색
학사학위	체육학학사	체육학과, 체육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전공) 사회체육학부(사회체육전공, 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스포츠건강복지학부(레저스포츠전공, 건강관리 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노인체육복지전공) 무용학과, 생활무용학과, 특수체육교육과, 태권도학과	검정
석사학위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생활체육전공, 건강관리전공, 안전관리전공, 스포츠언론정보전공, 스포츠산업·경영전공, 태권도전공	초록
	교육학석사	학교체육교육전공, 특수체육교육전공	청색
박사학위	이학박사	체육학과	노랑

* 박사학위 후드의 V선은 흰색, 내부 안감색은 교색(카민레드), 소매의 삼단은 검정색
(금색테두리 등 금지)으로 함.

<별표 2> 외국어시험 합격 평가 및 합격기준

구분	시험 종 류	주 관	합 격 기 준(등급/점수)
석사과정	TOEFL		만점의 40%이상 취득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60%이상 취득
박사과정	TOEFL		만점의 50%이상 취득(입학고사 성적 포함)
	TOEIC		
	TEPS	서울대학교	
	필답고사	한국체육대학교	만점의 70%이상 취득

* 재학 중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성적취득 제출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함.

(별지 제1호 서식)

학사 제 호

졸업증서

성명()

()년()월()일생

위 사람은 본교()학부·학과()전공()부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체육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별지 제1호의2 서식)

학사 제 호

졸업증서

성명()
()년()월()일생

위 사람은 본교()학부·학과()전공)와()학부·학과()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체육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별지 제 1호의3 서식)

학사 제 호

졸업증서

성명()
()년()월()일생

위 사람은 본교()학부·학과(전공)와(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체육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석제 호

학위기(석사)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에서 ()대학원 석사과정(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별지 제3호 서식)

박제 호

학위 기(박사)

성명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이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

(별지 제4호 서식)

명박 제 호

학 위 기(박사)

성 명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우리나라 스포츠 국제 경기력 향상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었음을 물론, 스포츠 외교활동을 통하여 한국을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학위번호 :